



CHOI HONG LEE & KANG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CONSULTANTS

2022 - 2023 Tax Update

WWW.CHLKCPA.COM

MIDDLE CLASS TAX REFUND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중, 캘리포니아주 (FTB) 는 주정부 조정후 총소득을 기준으로 결혼여부, 자녀유무에 따라 최소 \$200에서 최대 \$1,050까지 중산층 세금환급 (Middle Class Tax Refund)을 은행구좌로 직접 송금해주거나 데빗카드로 우편발송합니다. 이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이어야 하고 2021년 10월 15일까지 2020년도 세금보고를 완료했어야 합니다. 받은 세금환급은 캘리포니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의 주요 세법 사항 - 개인

CLEAN VEHICLE CREDIT

1.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따른 전기차 구매 관련 세금 혜택 (Credit)은 2022년 12월 31일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전기차 세금 혜택 대상은 새 자동차 (New EVs)의 경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과 전기차가 해당되며 세단(Sedan)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55,000이하, SUV, 트럭, Van의 경우 \$80,000이하의 경우, \$2,500에서 최대 \$7,500까지 세금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 보고서 조정후 총소득 (AGI) 이 30만불 (싱글 15만불) 이하일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세금 혜택은 환급이 되지 않는(Non-Refundable) 혜택이므로, 내야 할 세금이 있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구입을 고려하는 자동차가 세금 혜택이 가능한 차종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링크에 구매하려는 차의 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https://afdc.energy.gov/laws/electric-vehicles-for-tax-credit>
3. 2022년 12월 31일 후에는 누적 판매 대수와 상관없이 세금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8월 16일 이후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미국 (North America)에서 최종 조립 및 제조되어야 하고, 배터리에 사용되는 금속재료들의 최소 40%가 미국산이어야 합니다. 배터리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세금 혜택은 \$3,750까지로 제한됩니다.
4. 2024년에 구매하시는 전기차의 경우, 공인된 달러로 세금 혜택이 이전되어 구매하시는 자동차 금액에서 세금 혜택의 금액이 직접 차감되게 됩니다. 달러로 이전된 세금 혜택 또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캘리포니아에는 IRS가 제공하는 형태의 세금 혜택 (Credit)이 없지만 캘리포니아 청정 차량 환급 프로젝트 (California Clean Vehicle Rebate Project)를 통해 환급 (Rebate)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차량에 따라 \$1,000에서 최대 \$7,000까지 리베이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방 및 캘리포니아 모두에서 과세 소득입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은 최대 \$2,500까지 추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EVIOUSLY OWNED CLEAN VEHICLE CREDIT

전기차 구매 관련 세금 혜택(Credit)이 중고 자동차 (Old EVs)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후 구매하신 중고 자동차가 최소 2년이 지난 모델이고 공인된 딜러에서 구매하셨을 경우 \$4,000과 판매가의 30%중 적은 금액까지 세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중고 자동차의 판매가는 \$25,000이하이고 첫 번째 재판매시에만 적용되고, 부부 공동 신고시 조정후 총소득 (AGI)이 15만불 (싱글 7만 5천불) 이하일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혜택은 3년에 한번씩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

에너지 절약을위한 집 공사비에 대한 세금 혜택 (Credit)이 증가했습니다.

1. 2022년동안 납세자의 주 거주지 (Principal Residence)에 에너지 절약형 창문 혹은 문을 설치하셨으면, 비용의 10% 혹은 평생 세금 혜택 (Lifetime Credit)으로 최대 \$50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의 경우, \$200까지)
2. 2022년 후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은 비용의 30% 혹은 연간 세금 혜택(Annual Credit)으로 최대 \$1,20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 혹은 천연 가스 보일러, 온수기 및 바이오 에너지 보일러, 스토브의 경우 \$2,000까지 적용됩니다. 이 세금 혜택은 주 거주지, 세컨홈 그리고 별장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정 내 에너지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 \$150까지 세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2035년 1월 1일 전에 개인용도 부동산에 태양열 에너지 기기를 설치할 경우, 세금 혜택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기기들로써 태양열 전기, 태양열 온수 난방, 연료 전지 및 인증된 배터리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2021년 후에 설치하신 기기들에 대해서도 비용의 30%까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세금 혜택은 2033년에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소득에 제한없이 세금 혜택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도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의 주요 세법 사항 - 사업체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 CREDIT

사업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 후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상업용 자동차 관련 세금 혜택 (Credit)이 주어집니다. 적용되는 차량은 총 차량 중량 등급이 14,000파운드 (Pounds) 미만이고 배터리 등급이 7 킬로와트시(Kilowatt hours)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은 차량 기준의 15% (휘발유 또는 디젤로 구동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는 30%), 또는 휘발유 또는 디젤로만 구동되는 유사한 차량의 비용을 초과하는 차량 구매 가격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세금 혜택 한도는 차량당 \$40,000입니다. Clean Vehicle Credit과 마찬가지로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에 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일한 차량에 두번의 세금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NERGY EFFICIENT COMMERCIAL BUILDING DEDUCTION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납세자는 에너지 효율적인 상업용 건물을 설치하는 비용 또는 비용의 일부를 공제(Deduction)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최대 공제액은 건물 제곱피트당 (per Square Foot) \$2.50로 증가하며, 재무부 장관의 참조 표준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s Reference Standard)의 25%를 초과할 때마다 \$0.10씩 증가하여 최대 \$5 까지 증가합니다.

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CREDIT

업무용 전기 충전소와 같은 대체 연료 차량 충전 시설을 설치한 납세자는 충전시설 비용의 30%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후에 사용이 개시된 부동산의 경우, 세금 혜택이 위치당 \$30,000(per-location)에서 아이템당 \$100,000(per-item)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저소득층 주거지역 또는 농촌 인구 조사지역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NEW ENERGY EFFICIENT HOME CREDIT

새로운 에너지 효율 주택 세금 혜택 (Credit)은 2022년 1월 1일에 소급 적용되어 2033년 1월 1일 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거나 재건축 하는 계약자 또는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주택은 \$2,500에서 \$5,000 (2022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1,000에서 \$2,000) 범위의 세금 혜택(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이 Energy Star와 Department of Energy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Energy Star Multifamily의 새로운 건설 요구 사항 충족시 각 가구에 대해 \$500에서 \$5,000까지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2025년 1월 1일 전에 건설이 시작되는 특정 에너지 자산 (태양광 에너지 같은)의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열 히트 펌프의 경우 2035년 1월 1일전). 2022년에 사용하기 시작한 부동산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부동산 비용의 6%에서 최대30%까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임금 및 견습 요건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 변경 또는 수리 작업시 자격을 갖춘 견습생의 총 노동시간) 을 충족해야 합니다.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2025년 1월 1일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재생 가능 전기 생산을 하는 시설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재생 가능 전기 생산을 하여 특수 관계인이 아닌 다른 납세자에게 판매하는 전기의 각 킬로와트시 (kilowatt hours)에 대해 제공됩니다. 2021년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혜택 (Credit) 범위는 일정 수준의 임금 및 견습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킬로와트시(kWh)당 0.52¢에서 최대 2.60¢입니다. 이 세제 혜택은 최대 10년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생 가능 전기 생산 세금 혜택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과 에너지 투자 세금 혜택 (Energy Investment Tax Credit)은 동일한 시설에 대해 둘 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SELLING ENERGY CREDITS

2022년 12월31일 후에 납세자가 받은 세금 혜택 (Credit)을 특수 관계인이 아닌 다른 납세자 (An Unrelated Taxpayer)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한 크레딧으로는 재생가능전기생산크레딧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청정전기생산크레딧 (Clean Electriciricity Production Credit), 에너지투자크레딧(Energy Investment Credit), 청정전기투자크레딧 (Clean Electricity Investment Credit)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세금 혜택 판매수입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구매자도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 혜택은 한 번만 양도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을 과도하게 요청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면세 법인은 제외됩니다.

Tax Planning

&

Tax Audit

MEDICAL EXPENSE DEDUCTIONS

IRS는 모든 납세자의 총 의료 비용이 조정후 총 소득 (AGI)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22년 의료 마일리지 (Medical Mileage) 비율은 1월부터 6월말까지는 마일당18¢이고,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22¢입니다.

INCOME EXCLUSION OF CANCELLATION OF DEBT ON PRINCIPAL RESIDENCE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주거주지의 모기지 용자 탕감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에서 면제 됩니다. (\$750,000까지, 부부 별도 보고시 \$350,000까지) 캘리포니아는 2013년 이후, 주거주지 모기지 용자 탕감 소득 면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CONTRIBUTION TO RETIREMENT SAVINGS

퇴직 연금 플랜(401(k), SEP IRA 등)에 저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2년의 경우 401(k)의 최대 금액은 \$20,500 (50세 이상인 경우 \$27,000)이고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의 최대 금액은 \$61,000입니다. 2023년에 401(k)의 경우 최대 \$22,500 (50세 이상인 경우 \$30,000), SEP IRA의 경우 최대 \$66,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RETIREMENT PLANS: TRADITIONAL IRA AND ROTH IRA

납세자는 2022년 세금 공제를 위해 2023년 4월 18일까지 IRA 계정에 최대 \$6,000 (50세 이상인 경우 \$7,000)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은 최대 \$6,500 (50세 이상은 \$7,5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소득 (Conversion Income)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전환은 특정 상황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DISTRIBUTION OF RETIREMENT ACCOUNT

과세 연도 중 72세가 되는 납세자는 72세가 된 다음 해의 4월 1일까지 첫번째 최소요구 분배금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 RMD)를 수령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RMD를 연기한 납세자는 두 번째 해에 2번의 RMD를 수령해야 합니다. RMD를 수령해야 하는 자격이 되면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령해야 합니다. 퇴직 연금계좌 소유자가 59½세가 되기 전에 계좌에서 퇴직금 수령 (Distribution)을 하게 되면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1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A 또는 적격 연금 플랜에서 수령한 퇴직 연금 금액은 수령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롤오버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 없이 롤오버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교육 목적과 "첫 주택 구입" 목적으로 수령한 경우 10% 추가 세금에서 면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2년 예외 적용 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HILD TAX CREDIT (CTC)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녀 세금 공제액은 자녀당 \$2,000입니다. 이 자격이 되는 아동은 200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어야 하며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SSN)을 소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자녀가 아닌 다른 부양자에게 제공되는 \$500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CHARITABLE CONTRIBUTIONS

개인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 (Itemize Deductions)를 선택할 경우, 2022년 조정후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의 최대 60%까지 현금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50% of Federal AGI)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IRS는 실제 통화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또는 실제 통화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 통화의 과세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IRS Notice 2014-21)

1. 2022년 중 어느 시점이든지 가상 화폐로 금전적 이익을 수령, 판매, 송금, 교환 또는 취득한 납세자는 거래로 인한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2.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3.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4. 가상 화폐를 채굴하는 납세자는 과세 대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를 시작으로 가상통화 플랫폼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Form 1099-B를 발급해야 합니다. Coinbase 및 Robinhood와 같은 많은 플랫폼은 이미 1099-B양식과 유사한 명세서를 연말부터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17일부터 단일거래에서 \$10,000 이상의 코인포함 가상화폐를 받으면 거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Form 8300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GIFT TAX / ESTATE TAX EXCLUSION

2022년 연간 증여세 공제액은 \$16,000 (2023년은 \$17,000)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16,000 이상의 증여를 하는 납세자는 해당 증여를 증여세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2년의 경우 1인당 통합 증여 및 상속세 면제는 \$12,060,000 (2023년은 \$12,920,000) 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후에 \$5,000,000으로 다시 감소할 예정입니다. 연간 공제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하면 평생 공제액에 합산되므로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FOREIGN-EARNED INCOME EXCLUSION

2022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발생한 소득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해서 최대 \$112,000의 해외 근로 소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 \$224,000까지 (2022년 기준) 해외근로소득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과세 주거지 (Tax Home)가 해외에 있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중 외국 체류기간이 330일 이상 (Physical Presence Test)이었거나 Bona Fide Residence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납세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2022년 동안의 어느 한 시점이라도 모든 계좌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했다면 개인 세금 보고서 해외계좌를 2023년 4월 18일까지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0/15까지 연장가능) 외국 금융 계좌에는 다음 계좌들이 포함됩니다: 중개 계좌(Brokerage Accounts), 뮤추얼 펀드(Mutual Funds), 신탁(Trusts) 또는 기타 유형의 외국 금융 계좌. 만약 보고하지 않는 경우, \$13,481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134,806 혹은 계좌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2011년부터 모든 은행 계좌, 보유 주식 및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 (시가 기준)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합니다.

연말 기준 : 미국 거주시 - 부부 \$100,000 /Single \$50,000,
외국 거주시 - 부부 \$400,000 /Single \$200,000

연중 최대잔고: 미국 거주시 - 부부 \$150,000 /Single \$75,000,
외국 거주시 - 부부 \$600,000 /Single \$300,000

PRINCIPAL RESIDENCE

소유한 주택에 최근 5년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택판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250,000 (Single), \$500,000 (부부)까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ENALTY ISSUE FOR NOT HAVING HEALTH INSURANCE CONTINUE IN 2022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면제 자격이 없는 한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22년 벌금은 다음 둘 중 높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가족 성인 1인당 \$850 (부양 자녀당 \$425); 또는

가정의 세금 보고하는 총 소득의 금액의 2.5% 중 더 높은 금액이 됩니다.

FIRST-TIME PENALTY ABATEMENT

2022년 1월 1일부터 FTB (캘리포니아주)는 개인 납세자가 세금 보고 및 납부를 늦었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에 대한 감면을 제공합니다. 요청은 구두 (Orally) 또는 서면 (In writing)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IRS)는 4년에 한번씩 벌금감면을 허락하는 반면 캘리포니아 벌금감면은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연방정부의 벌금감면은 개인 납세자와 기업 모두에게 제공되며 세금 보고서 미제출, 세금 미납, 늦은 세금 보고서 제출 또는 늦은 세금 납부에 한에 적용됩니다.

요청은 구두 또는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REINVESTED DIVIDENDS

재투자된 배당금은 처음 주식을 구입한 금액과 함께 원가에 포함되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CAPITAL GAIN (LONG-TERM)

Rate	Taxable Income Breakpoint (2022)			
	독신 (Single)	부부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개별 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외부모 (Head of Household)
0%	\$41,675	\$83,350	\$41,675	\$55,800
15%	\$459,750	\$517,200	\$258,600	\$488,500
20%	No Breakpoint			

**조정후 총소득(AGI) 금액에 따라 Net Investment Income Tax (3.8%)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INVESTMENT INTEREST

투자 시 발생한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투자 이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해당년도에 미사용된 이자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STALLMENT SALE

투자 자산 매매에 대한 대금을 분할 상환 (Owner Carry) 하면, 이익금을 상환기간 동안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채권 등은 제외).

CALIFORNIA MINIMUM WAGE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의 명수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시급은 \$15.50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LA시의 최저시급 \$16.04, LA시 미편입지구 (Unincorporated Area of LA)의 최저시급 \$15.96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PASS-THROUGH ENTITY ELECTIVE TAX

캘리포니아에서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으로 과세되는 LLC, S Corporation, 파트너십들은 과세 연도 2021년 - 2025년동안 주정부 소득세를 파트너(주주) 대신 법인이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액은 법인 순이익의 9.3%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주주)의 연방 순이익 (federal net income)을 줄여주고 법인이 지불한 캘리포니아 주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을 파트너(주주)가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납세자는 개인, 수탁자 (Fiduciary), 상속재산 (Estate), 신탁 (Trust), Single member LLC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연도의 경우, 그 과세 연도 동안 6월 15일까지 첫 번째 납부금 (\$1,000 또는 이전 과세 연도에 납부한 선택 세금 (Election tax)의 50%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자격 조건이 적용되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있습니다.

나머지 납부금은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CALSAVERS PROGRAM

CalSavers는 고용주가 자체 은퇴 계획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IRS는 캘리포니아 CalSavers 프로그램을 Roth IRA로 분류합니다. 2022년에 시작하는 신규 사업체의 경우 등록 마감일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의 고용주의 마감일은 2022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고용주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직원당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번째 벌금 통지시). 직원이 1명 이상인 고용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501(c)(3) 면제 대상인 종교 단체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NET OPERATING LOSS (NOL) MODIFICATION BY CARES ACT

1. 과세 연도 2018-2020에 발생한 손실 (NOL)은 과거 5년 소급 적용(carry back)될 수 있습니다.
2. Tax Cuts and Jobs Act 법안을 통한 80% 과세 소득 제한 (80% taxable income limitation)은 2018-2020 과세 연도 동안은 유예되었습니다.
3. 연도별 손실 (NOL) 처리 방식

손실 발생 연도	과거 소급 가능 연수 (Carrybacks)	과세 소득 제한 (Taxable income limitation)	이월 가능 연수 (Carryforward)
2018 이전	Federal: 2년	Federal: 과세 소득의 100%	Federal: 20년
	CA: 2년(2013-2018 손실)	CA: 과세 소득의 100%	CA: 20년
2018-2020	Federal: 5년	Federal: a. 2020년 및 그 이전 세금보고에 청구: 과세 소득의 100% b. 2021년 및 그 이후 세금보고로 이월: 과세 소득의 80%	Federal: 무한
	CA: 2018 이전 손실 : 2년 2019 이후 손실: 없음	CA: 과세 소득의 100%	CA: 20년
2020 후	Federal: 없음	Federal: 과세 소득의 80%	Federal: 무한
	CA: 없음	CA: 과세 소득의 100%	CA: 20년

**예외: 보험회사 및 농가의 경우 2년 환급

AUTOMOBILE EXPENSE

2022년의 표준 마일리지 비율은 1월부터 6월까지의 Mile당 58.5¢이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62.5¢입니다. 납세자는 입증을 위해 자세한 마일리지 일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택에서 사무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Commuting에 해당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179 AND SPECIAL DEPRECIATION

2022년동안 Section 179에 따라 사업주는 \$2,700,000 미만의 장비 구입시 \$1,080,000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 9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이 되는 새 장비 혹은 중고 장비 구입시에도 100%까지 Bonus Depreciation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Bonus Depreciation은 2023년에는 80%로 감소되며 단계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매년 20%씩 계속 감소합니다.

MEAL & ENTERTAINMENT

2018년 부터 Client Entertainment (스포츠, 극장 티켓, 골프, 아웃팅 등) 에 대한 Deduction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식사도 50%까지만 공제되고, Travel 에서의 식사도 50%만 공제됩니다. Clients와의 식사는 종전과 같이 50% 공제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Holiday Parties, Company Picnics, and Other Occasional Employee Appreciation Events는 종전과 같이 100% 공제됩니다. 이벤트 진행시 행사비와 식비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 식사비 공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ENSION PLAN

기존의 은퇴연금 계정에 최대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Pension Plan이 없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INCOME TAX AUDIT

SOURCE OF LIVING EXPENSE

보고하신 소득보다 생활비 및 지출금액이 많은 경우, 자금 원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OURCE OF FUND

부동산 및 사업체 매입 시, Down Payment의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BANK DEPOSIT

만약 은행 입금이 보고되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Check Copy 등)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입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HARITABLE CONTRIBUTION

현금을 \$250 이상 교회 및 비영리단체에 기부하신 경우 현금 확인서를 받으시고, \$250 미만을 기부하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Canceled Check 등) 보관해야 합니다. \$5,000 이상의 현물을 기부하신 경우, 감정사의 싸인이 포함된 서류가 세금 보고서 필요합니다.

SEPARATE BANK ACCOUNT

모든 Business 수입은 Business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Business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Check를 사용하여 Transfer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ASH TRANSACTION

은행 거래 시 \$10,000 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인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방 국세청 (IRS)에 보고됩니다. \$3,000 이상 \$10,000 이하의 현금거래시,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보관한 뒤 정부 요구 시 제출합니다. 현금 거래 보고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10,000 이하로 분할 입출금한 의도가 보일 경우에도 IRS에 보고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Business 거래에서 연간 \$10,000 이상의 현금을 한명의 손님에게 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8300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INCOME TAX AUDIT

FOREIGN GIFT

2022년에 외국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 혹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17,339 이상 증여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3520 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FORM 1099 FILING REQUIREMENT

납세자가 form 1099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form 1099를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Due Dates까지 IRS 에 보고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Form 한건당 \$50 ~ \$280 벌금이 부과됩니다.

Form 1099 Due Dates

1) Paper Form Filing Due Date:

1099-NEC의 경우 1/31/2023,

1099-MISC, 1099-DIV, 1099-INT 및 1099-R의 경우 2/28/2023

2) E-filing Due Date:

1099-NEC의 경우 1/31/2023 ,

1099-MISC, 1099-DIV, 1099-INT 및 1099-R의 경우 3/31/2023

RECORD KEEPING

Bank statement, canceled checks, 영수증, 송장 (invoices) 및 기타 모든 문서는 세금보고일로부터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시, 주거용 혹은 상업용 부동산 구입관련 서류 (Escrow Paper등)을 해당 세금보고 후 4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AUDIT NOTICE

감사를 통보 받으시면,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업체 혹은 가정으로 감사관이 불시 방문하는 경우, 감사관의 신원과 방문사유를 확인하시고 질문에 응답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Los Angeles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1700 F: (213) 365-1726

Partners

Ilsup (Tommy) Lee	(213) 639-6285	ext.717	tlee@chlkcpa.com
Ik Su (Justin) Kang	(213) 639-6296	ext.716	jkang@chlkcpa.com
Soh Yun Kang Park	(213) 550-2182	ext.713	sykang@chlkcpa.com
Kyu J. Kim	(213) 550-1277	ext.727	kyukim@chlkcpa.com
Henry Kim	(213) 382-8001	ext.780	hkim@chlkcpa.com

Managers

Samantha Kang	(213) 550-2183	ext.712	samkang@chlkcpa.com
Changkwon Moon	(213) 550-2184	ext.720	ckmoon@chlkcpa.com

Staffs

Emily Chung	(213) 382-8001	ext.781	echung@chlkcpa.com
Sunny Soh	(213) 365-1700	ext.719	ssoh@chlkcpa.com
Junyong Jung	(213) 550-2091	ext.714	jjung@chlkcpa.com
Frederick Kim	(213) 365-1700	ext.718	fkim@chlkcpa.com
Hyemin (Hannah) Kim	(213) 365-1700		hannah@chlkcpa.com
Kyeongbin Park	(213) 550-2186	ext.723	lpark@chlkcpa.com
Brian Changgi Hong	(213) 550-2090	ext.725	brian@chlkcpa.com
Bokyung Shin	(213) 365-1700	ext.700	bshin@chlkcpa.com
Yujin Kim	(213) 365-1700	ext.700	yjkim@chlkcpa.com

Advisors

Jung G. Choi (Inactive)	(213) 365-1700		jgbsbc@gmail.com
Sung Ha Hong (Inactive)	(213) 365-1700		sunghahongcpa@hotmail.com
Spencer S. Moon	(213) 365-1700		spencermooncpa@gmail.com
Jay Chung	(213) 365-1700		jaynchung@gmail.com

La Palma Office

1 CENTERPINTE DR., SUITE 350, LA PALMA, CA 90623 T: (714) 676-8100 F: (714) 735-9029

Partner

Soh Yun Kang Park	(213) 550-2182	ext.713	sykang@chlkcpa.com
Kyu J. Kim	(213) 550-1277	ext.727	kyukim@chlkcpa.com

Manager

Amy Lee	(213) 639-6295	ext.719	amylee@chlkcpa.com
---------	----------------	---------	--------------------

Staffs

Haley Jeehea Ahn	(213) 481-5486	ext.722	hjahn@chlkcpa.com
In Joo Moon	(213) 550-2185	ext.735	ijmoon@chlkcpa.com
Sharon Cha	(213) 427-9595	ext.728	scha@chlkcpa.com
Cathy Byun	(714) 676-3131	ext.730	cbyun@chlkcpa.com
Huiji Seo	(714) 676 -8100	ext.729	hseo@chlkcpa.com
Scott Lee	(714) 676 -8100	ext.733	scottlee@chlkcpa.com

Torrance Office

3820 DEL AMO BLVD., SUITE 220, TORRANCE, CA 90503 T: (310) 542-6373 F: (310) 370-5565

Partner

Youngsun (Judy) Rufsvold	(310) 542-6373	ext.701	jko@chlkcpa.com
James M. Chung	(310) 542-6373	ext.705	jchung@chlkcpa.com

Staffs

Seo Won Choi	(310) 542-6373	ext.703	schoi@chlkcpa.com
Elly Lim	(310) 542-6373	ext.704	elim@chlkcpa.com

Advisor

Hong Won Suh	(310) 542-6373		
--------------	----------------	--	--

